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국제인권규범의 시사점*

오 영 달 (충남대학교)
(onggeong@cnu.ac.kr)



국문요약

본 논문은 차별금지법안의 입법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들 속에서 중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결국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 그동안 차별방지 목적으로 체결된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종차별 등 7개 주요 인권 하위분야와 달리 성소수자들을 위한 국제협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발표된 욱야카르타 원칙과 욱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국제협약들보다 그 법적인 권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시도된 차별금지법안의 결정판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기본법으로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에 관한 좀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그 반대론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 차별금지법안, 국제인권, 성소수자, 욱야카르타원칙, 욱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I. 서론

오늘날 인류사회에서 인간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인권 규범은 점차 널리 확산되어가고 있다. 인류사회의 다양한 수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 구성원은 인간이고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바람직한 위상과 관련하여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규범이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권 규범의 발전은 인간 공동체의 조화롭고 원만한 공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역설적으로 인류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강한 인간들이 약한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이성을 가진 윤리, 도덕적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기적인 성향에 기초하여 홉스(Thomas Hobbes)가 말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모습 또한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인간 공동체 내에는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말하는 불평등의 기원으로서 사유재산제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불평등 그리고 차별의 모습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생물적 욕망의 존재로서 그러한 욕망의 충족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갈지에 대한 공동체의 규범도 계승되어 왔다. 인간의 욕망 중에는 재물 등의 소유욕 외에 성적인 욕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적인 욕망은 단순히 욕망 충족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인류의 종(種)을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으로 유지해가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습적 또는 법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확립되어왔다. 특히, 유엔총회 그리고 관련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인권의 하위 주제분야 별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조약문서로서 다수의 국제협약들이 체결되었다. 유엔 회원국들은 그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국내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입법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전파, 확산되어온 민주주의 정치이념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것처럼 인권 존중과 차별 시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제안되어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그 좋은 사례이다. 이 법안은 그 명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권존중이라는 원칙의 연장으로서 차별금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제안되어 그동안 시행되어 온 장애인, 성별 등과 관련되는 차별금지법안들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이려는 입법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법안은 특히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어서 그에 관한 논란 또한 치열하다. 2001년 한국 국회에서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기본적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언급한 이래¹⁾ 이후 성별이나 장애인 등 인권의 하위 주제분야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제정되어 왔다.²⁾ 이제 한국사회는 기존의 차별금지법들을 보완하여 관련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를 위한 좀 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직 법률상 평등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 이후 미국의 모든 주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이상현 2020, 187)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논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다양한 분야의 차별금지문제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음선필 2020, 113).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 서론에 이어 제2장의 전반부에서는 인권론 일반에서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권 개념의 등장 속에서 경쟁하는 논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왔는지 논의한다.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그리고 차별금지의 당위성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장의 후반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해 인권의 여러 하위 분야에 대해 체결된 국제협약들을 검토한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도 양성간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하위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를 둘러싼 국내의 찬반 논쟁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아직 반대의견을 가진 세력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기울여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요약, 정리하고 차별금지법안

1)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841#0000> (검색일: 2021. 02. 09.).

2)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등이 있다(홍성수 2018, 6).

의 통과를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II. 인권보호와 차별금지 규범의 국제적 발전

인권보호와 증진 그리고 그 논리적 연장으로서 차별금지의 정당성은 인류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전되어 왔다. 먼저 유럽 근대에 있어서 자연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당시 전제 정권에 대해 저항의 인식공동체를 형성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같은 인식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베르타 폰 주트너(Bertha von Suttner)가 말한 ‘붉은 실(red thread)’의 역할³⁾을 한 사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인권과 같은 어떤 대의를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어서 인류 역사가 긍정적인 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종종 기득권자들과의 충돌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오늘날 인권 규범의 정착에 기여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했던 개인들이나 단체들은 근대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등 몇 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통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규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Lauren 2011).

1. 인권규범 출발의 기초로서 자연권론

인권 존중의 당위성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차별금지로 연결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래적 권리로 흔히 이해된다. 여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류(human species)에 속하는 종으로 그 개별적 또는 공동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생물학적 분류 중에서 동물에 속한다. 종종 동물권(動物權, animal rights)도 주장되지만,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의미한다. 인권에 대하여 동물들도 한 생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동물권 개념으로부터 동물에 대한 학대금지과 보호를 규정한 법이 영국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권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right)와 자유라고

3) 출처: <https://www.romestatute.com/post/176085415538/following-the-red-thread-today-and-tomorrow> (검색일: 2021. 02. 10.). 이 용어는 비유적인 것으로 원래 주트너를 중심으로 선양된 것으로 날개의 염주들을 꿰어 연결하는 실가닥처럼 주로 국제평화운동 분야에서 평화라는 대의와 관련되는 서로 다른 담화, 사건, 인물들을 시대별로 이어주는 일련의 주요 사례들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 용어를 국제인권분야에 적용해본 것으로 미국 센트럴미시간대학교 호프 엘리자베드 메이(Hope Elizabeth May) 교수로부터 계몽받았다(May 2019, 207-210).

할 때 이 권리의 의미는 인간공동체의 운영과정에서 옳으며, 선하고, 또 바람직하며, 또 달리는 수용가능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onnelly and Whelan 2020, 26). 이러한 주장은 칸트(Immanuel Kant)가 말하는 황금률처럼 초월적 이성에 기초한 성찰을 통해 도출된다. 사람들이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인간의 존엄성(dignity) 개념도 한편으로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즉,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은 한편으로 보장받아야 할 어떤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옳은 것에 대한 문제는 선형적 차원과 실제적 차원에서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닌데, 특히 후자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있는 복잡다기한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지만 인간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평등과 차별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로 표현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개념이 작용하기도 한다(서헌제 2020, 163; 명재진 외 2020, 247).

역사적으로 인간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원칙을 정할 때 그것은 종종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전통적 권위에서 정당성을 찾기도 한다. 오랜 전통과 관행 속에 어떤 통치권의 정당성이 존재하게 된다(Crawford 2002). 예를 들면, 정치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전통적인 통치권을 정당화한 좋은 예는 1680년 영국의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가 주장한 가부장권론(Patriarcha)이다. 필머는 이러한 가부장권론을 통해 신이 아담에게 가장으로서 가정과 후손을 지배할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왕도 신으로부터 국가를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존 로크(John Locke) 등 당시의 다른 사상가들에 의하여 부정되었는데 인간들은 타고날 때부터 신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자연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그 정부라는 존재는 바로 인간들이 타고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연권들인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더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Laslett, ed. 1999, 350).

이러한 담론적 정당화 과정에서 오늘날 인권의 자유권적 차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을 보는 것이 오늘날 미국 등 많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에서 이념적 기초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개별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공동체 원리 하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즉,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서로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 부유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즐기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권 중심의 인권론에 대하여 그것을 유산계급(bourgeoisie) 위주의 인권론으로 비판한 대표적 이론가가 19세기 중엽의 칼 맑스(Karl Marx)이다(Davidson 1995, 2). 맑스는 그의 공산당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은 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수단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맑스는 자유권보다 평등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때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권을 누릴 수 있다는 인권 개념을 제시하였고 그 실현 방법으로서 공산주의 세계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맑스의 인권관에 기초한 정치체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을 통해서 인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권관에 기초한 정치체제로서는 과거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의 소비에트연방,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동부유럽 정권들, 한반도에서 북한 김일성의 정권, 그리고 중국 마오쩌둥의 정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인권론, 정치이념, 그리고 그에 기초한 정치체제는 당위적으로 부의 고른 분배와 소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존엄한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현실적 결과는 물질적으로 하향적 평등을 가져왔을 뿐이었으며 인간적 자유나 풍요로움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공동체 운영노선의 하나로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쓰려는’ 구상이 인간 삶의 실제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보다는 공덕심으로 공동체 생활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인권론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개인들 간의 상호성을 감안한 평등 그리고 그에 더하여 사회권에 기초한 평등 원칙을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다양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들 역시 자유권을 중심에 두면서도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권을 보완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맥락에서 장애인이나 아동들의 경우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는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존중과 권리 옹호론은 자유권 중심의 인권론에 사회권 중심의 인권론이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평등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라이브(Tribe)는 성소수자의 권리 문제를 자유권이나 평등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유와 평등 두 영역을 포괄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허순철 2014, 86, 각주 145).

인간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또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이다. 또한 사람들은 보편적인 생래의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여기는 정치적 관행을 변경하고자 시도한다(Donnelly and Whelan 2020, 27-28).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언이 시사하듯이, 일반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원칙과 관련되는 사항을 실정법으로 전환하면 그 도덕, 윤리적인 원칙은 법적인 강제력을 띠게 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정치적 관행 그리고 정치적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더 이상 인권을 주장하지 않고도 인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권과 관련한 실정법 제정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조약문서로서 도출된 많은 국제인권협약들, 그리고 관련 국내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와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처럼 입법화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만큼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2.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 규범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유엔 헌장의 인권보호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조약문서로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채택, 그리고 탈냉전 시대의 비엔나 선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인권장전들과 함께 인권의 하위주제 분야별로 도출된 인권협약들이다.

(1)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들 그리고 비엔나 선언

인류사회는 히틀러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과 집시들에 대한 대량학살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승전국 지도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또 다른 참혹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국제기구가 유엔이다. 국제사회의 헌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헌장의 전문(前文, preamble)과 제1조 3항에 유엔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로 인종, 성, 언어,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 헌장의 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이다. 이 세계인권선언에는 앞에서 논의한 자유권과 사회권이라는 두 범주의 인권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자유권과 사회권 중 어느 범주가 진정한 의미의 인권인가에 대하여 서구 자유진영 국가들과 동구 공산진영 국가의 대표들 사이에 심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당시 자유권의 범주만을 진정한 의미의 인권으로 보았던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들과 반대로 사회권의 범주를 우선적인 인권의 범주라고 주장하는 동구 공산권 국가의 대표들 간에 이론적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두 범주를 하나의 문서로 담는 세계인권선언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유엔 총회의 결의 형태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적으로 권고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의 선언적 문서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는데 그 결과는 바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들이었다. 조약문서로서 이 인권규약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때 불거진 동서 양진영 간의 대립으로 결국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라는 두 개의 문서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문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진영 사이에 정치이념적 경쟁과 대립의 쟁점이 되었을 뿐이고 인류사회의 실질적 인권보호에는 이렇다 할 기여를 하지 못했다. 1989년 동서독을 나누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몰락 직후인 1993년에 소집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자유권과 사회권 두 범주의 인권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비엔나선언을 도출하였다. 이후 인류사회는 국가 내외 국제사회에 있어서 자유권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권의 존중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국가 내 복지제도의 확대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통해서였다.

(2) 주제별 국제인권보호 협약들

국제사회는 인권의 구체적인 하위 주제 분야 별로 인권보호와 증진 그리고 차별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들을 도출해왔는데 이러한 국제협약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협약들이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법제화 노력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대량학살방지협약

대량학살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또는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은 194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의 260 A (III)호 결의로 채택되어 1951년 1월 12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대량학살은 어떤 민족, 소수종족, 인종, 종교 집단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살해하거나, 심신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대량학살방지협약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주체인 개인을 기본적 구성단위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에 대한 인권보호와 차별방지를 의도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히틀러 치하 독일에서 수많은 유대인이나 기타 소수집단들이 학살당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먼저 인권의 주체로서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들도 마찬가지로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이에 대하여

4)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imeofgenocide.aspx> (검색일: 2021. 02. 07.).

국제사회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국제사회는 히틀러의 대학살을 보면서 대량학살 방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유하게 된 것이다. 즉, 국제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2) 인종차별철폐협약

대량학살방지협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새롭게 도출된 조약문서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 있다. 이 협약은 1965년 12월 21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된 2106(XX)호의 결의에 대한 서명과 비준이 시작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하였다. 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모든 인간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차별 그리고 그러한 차별의 조장에 대하여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서 인종의 차이에 기초한 어떠한 우월성의 견해도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그러한 견해는 도덕적으로 규탄할 만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그 어디에서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에 대한 어떠한 정당화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⁵⁾ 또한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차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공존에 장애가 되며 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조화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들이 인종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 및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 인권의 모든 요소들을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종차별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물론 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당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apartheid)이나 미국 일부 주에 있어서 존재했던 인종차별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계기로 하여 오늘날 국가 내 또는 국제사회에서 인종차별금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인권 규범이 되었으며 국내입법의 이론적 원천을 제공하였다. 또한 실제 인종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당사자가 원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3) 여성차별철폐협약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도 인권 존중과 차별금지를 마련된 국제인권협약들

5)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rd.aspx> (검색일: 2021. 02. 07.).

중의 하나이다.⁶⁾ 이 협약은 1979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서명과 비준 절차를 거쳐 1981년 9월 3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이 채택된 지 10주년인 1989년 현재 약 100여개 국가들이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있다. 이 협약은 많은 인권 관련 협약 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 협약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유엔 헌장 전문(前文) 등의 기본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적 원칙을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국들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의 실행을 위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에 대한 평등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 제61차 총회의 결의(A/RES/61/106)에 의해 채택되었고 2007년 3월 30일 이후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2008년 5월 3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도 기본적으로 인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조약이다. 즉, 이 협약의 전문(前文)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에서 회원국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보편성, 불가분리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 협약은 장애인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 증진, 보장하여 그들의 생애적인 존엄성을 고양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천명하였다.⁷⁾ 이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인식의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제도적 장치로서 유엔은 장애인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각 협약 당사국들로부터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협약 당사국들에게 장애인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제안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6)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 (검색일: 2021. 02. 07.).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은 이미 1952년에 등장하였었다. 또한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은 1957년에 체결되었다.

7) 출처: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CTC/Ch_IV_15.pdf (검색일: 2021. 02. 08.).

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간략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으로도 불리는 이 협약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서명과 비준을 받아 2003년 7월 1일 발효하였다.⁸⁾ 이 협약은 30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된 유엔 내의 연구, 토론, 그리고 그 밖의 전문가 및 대표단 회의의 토론으로부터 나온 결과물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역사적 새 장을 의미하였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5, 1). 이 협약의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협약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규정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들을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신념, 정치 또는 기타 의견, 민족, 종족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위상, 재산, 결혼, 출생 또는 기타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협약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한 정책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이주노동자위원회(Committee on Migrant Workers)가 설치되어 당사국들이 이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권고를 한다.

6) 아동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⁹⁾은 유엔 총회에 의하여 1989년 11월 20일 결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에 발효하였으며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 발효하였다.¹⁰⁾ 두 협약 모두 앞의 협약들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라는 인권의 근본적인 정신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음에 논의되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욕아카르타 원칙에서 아동들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아동 시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협약들은 어떤

8) 출처: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4rev.1en.pdf> (검색일: 2021. 02. 09.).

9)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검색일: 2021. 02. 08.).

10)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at.aspx> (검색일: 2021. 02. 08.).

11) 예를 들면,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욕아카르타 원칙들 중 18번째와 24번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출처: http://yogyakartaprinciples.org/wp-content/uploads/2016/08/principles_en.pdf

면에서 차별금지라는 측면보다는 아동들에게 좀 더 특별한 보호를 그리고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좀 더 인권의 존중의 차원에서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욱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과 욱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 (Yogyakarta Principles Plus 10)

1) 욱야카르타 원칙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엔에서 최소한 7개의 인권 하위 분야에 대해 다자조약문서로서 국제인권협약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국제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성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25개 국가의 29명 전문가들이 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욱야카르타 가자 마다 대학교(Gadjah Mada University)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채택한 “욱야카르타 원칙: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원칙들”¹²⁾이라는 문서가 있다. 이 문서를 채택한 ‘국제인권법과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전문가 패널’의 공동의장은 소니아 오누페 코레아(Sonia Onufer Correa)와 윗뿔 문타본(Vitit Muntarbhorn)이다.

이 문서는 그동안 모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평등한 존엄과 존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성별,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헌법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또는 추측(perceived)에 기초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인권 유린은 세계적이고 뿌리 깊은 점이 있는 것으로 심각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권 유린들 중에는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학대, 성적 공격 및 강간, 프라이버시의 침해, 자의적 구금, 고용과 교육 기회의 거부, 기타 인권의 향유와 관련한 심각한 차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권 위반은 인종, 연령, 종교, 장애, 경제, 사회, 또는 기타 지위와 관련한 원인이 있는 것과 같은 각종 위반형태, 증오, 차별, 배제의 경험과 결합되기도 하는 복합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인권 관련 유엔제도들이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를 확인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은 파편화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검색일: 2021. 02. 12.).

12) 출처: http://yogyakartaprinciples.org/wp-content/uploads/2016/08/principles_en.pdf (검색일: 2021. 02. 12.).

이 장문의 ‘욕야카르타 원칙’의 구성 형식은 먼저 인권보호에 관한 시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의 보편적 원칙을 확인하고 그 원칙이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사람들에게 대한 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나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 중의 하나는 헌법을 포함하여 기존의 국내 법률문서들이 검토되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폐기되는 것이다. 욕야카르타 원칙들 총 29가지 중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18번째와 24번째이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의 항목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인권보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18번째와 24번째 원칙들은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번째 원칙의 중심 내용은 성소수자들이 의학적 유린(medical abuse)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누구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강제로 어떤 형태의 의학적 또는 심리적 치료, 절차, 또는 의료시설 구금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그 자체로 의학적 조건이 아니며 그런 견지에서 다루어지고, 처치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 또는 기타 질병을 위한 백신, 치료, 미생물항생제와 관련되는 것을 포함하여 비윤리적 또는 비자발적 의료 절차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의학적 또는 심리적 치료, 또는 상담을 통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치료하거나, 처치되고 또는 억압되어야 할 의학적 조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4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가정을 세울 권리가 있으며 가족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어떤 가족도 그 구성원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정부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차별없이 입양, 조력임신(제공자의 정액주입을 포함하여)을 통해 가정을 수립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과 정책들이 가족의 개념을 가문 또는 결혼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가족도 그 구성원들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가족 관련 사회복지와 기타 공적 혜택, 고용, 그리고 이주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또는 등록 배우자를 인정하는 국가들에서 이성간 혼인 또는 등록 배우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의무, 자격, 특권, 또는 혜택을 동성 비혼인 배우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

욕야카르타원칙이 발표된 지 약 10년이 지난 2017년 11월 10일에 기존의 욕야카르타원칙 29가지와 여기에 10개의 추가 원칙들과 111개 국가의무들이 더해진 욕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이 새로운 문서는 국제인권봉사기구(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와 아르크 인터내셔널(ARC International)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구성한 8명의 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 기초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욕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이라는 문서의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2017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 회의의 전문가들 중에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 다수의 법적인 전통, 그리고 다양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 표현(gender expression)과 성 특징(sex characteristics)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 문서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의 하나는 기존의 욕야카르타 원칙이 성소수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라는 두 범주만 언급한 반면에 성 표현(gender expression)과 성 특징(sex characteristics)이라는 두 범주를 추가하여 포함시킨 점이다.¹³⁾ 또한 2006년의 욕야카르타 원칙에서 언급된 원칙들 29개에 10개의 원칙들을 추가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좀 더 철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2006년의 욕야카르타원칙에서 제시한 국가들의 의무들에 대하여 대폭 추가,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의 분류명을 양성을 넘어 복수(複數)로 해야 하며 공문서에 성별이 등록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성 소수자의 가족 형성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생식 세포의 보존 같은 임신 방법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2006년 욕야카르타원칙은 그 준수 주체를 대체로 국가로 보아 국가들에게만 요구하는 세부적인 의무사항들을 제시한 반면 2017년 욕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은 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넣어 국가들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의 실현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기구들과 스포츠기구들이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성 표현, 그리고 성 특징과 관련되는 업무와 활동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006년의 욕야카르타원칙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망라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 욕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은 그것을 좀 더 보완, 강화한

13) 출처: http://yogyakartaprinciples.org/wp-content/uploads/2017/11/A5_yogyakartaWEB_-2.pdf (검색일: 2021. 02. 13.).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욱아카르타원칙 29개와 욱아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나온 것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성소수자들에게도 차별없이 평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정부들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그리고 성 특징과 관련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성소수자들이 인간으로서 삶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욱아카르타원칙이나 욱아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의 두 문서는 모두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왜 인간사회에서 범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평등한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의 정당성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같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원칙적으로 확인한 인간의 존엄성 같은 일반원칙에서 찾고 있을 뿐이다. 만약 욱아카르타원칙 같은 정제된 문서에서 학문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첨부자료 형태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성 윤리 또는 전통적 가족의 관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더 많이 경주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욱아카르타원칙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치료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왜 그러한 시도가 불필요한 것인지 좀 더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성소수자들이 가지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그리고 성 특징이 모두 선천적인 현상으로서 후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다시 범주를 세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법적인 접근을 달리 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4)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관련 국제인권규범들의 특징

위에서 간략히 검토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는 인권의 일반적 원칙 그리고 인권의 7개 하위분야에 대한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대량학살, 인종 차별, 양성간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사례들에 주의를 기울여 그 개선과 해결을 통해 인류사회 구성원들의 보다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그러한 협약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인권장전들을 원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 문서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그 논리적 연장으로서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종차별 등 인권의 하위 세부 주제에 대한 개별적 국제협약들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7개 인권 하위 분야의 국제협약들은 국제사회가 범세계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70여년 간 기울여온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 주제 분야들에 있어서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에 기초한 예외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인권협약들의 취지에 대하여 전면적인 반대 의견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인권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아직까지 왜 도출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위에서 7개 분야의 인권협약들을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차원의 조약문서 도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신,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금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소수자 보호 및 차별금지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 논의한 욱야카르타 원칙과 그 후속문서인 욱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인 것이다. 이 문서들은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고 회원국들에 의해 서명 및 비준된 국제협약들과 달리 그 국제법적 구속성이나 실효성은 지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하여 인권 분야의 다양한 하위 주제에 대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라는 주제에 대하여 아직 견고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국내법으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정법들을 속속 제정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 12월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4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혼인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오버저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사건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자 사회 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주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전 세계에서 모두 35개 국가 정도가 동성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하고 있다.¹⁴⁾ 대만은 2019년 5월 17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14)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1. 02. 13.).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늘어가면서 향후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 대한 국제규범 그리고 국내법들의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Ⅲ.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과 전망

1. 기존의 차별금지법안들

한국 내에서도 인권 관련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정되거나 제안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주요 인권기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권 원칙의 확산과 보호 노력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10개 국가들은 2012년 한국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이어서 2017년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 국가들이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인권보호 협약들의 실행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이 한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허병조 2020, 6-7).

한국 내에서도 그동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한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여 2007년 12월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그 효시였다(이지현 2014, 107). 원래 한국에서 성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차별을 금지한 첫 번째 법문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었다(음선필 2020, 110). 그러나 이 국가인권위원회법만으로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고 한국 사회에서 각 분야의 차별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성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의 명시적 사유로 포함시킴으로써 동성애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었다.

먼저 제17대 국회(2004-2008)의 회기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2007년 정부안에 더하여 2008년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었으나 두 법안 모두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2011. 9. 15)과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1. 12. 2)이 있었으나 이 법안들도 심사 중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어서, 제19대 국회에서는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2. 11. 6),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3. 2. 12), 그리고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3. 2. 20)이 각각 있었는데 김재연 의원의 법안은 심사 중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김한길 의원의 법안과 최원식 의원의 법안은 임기 내에 입법제안이 철회되었다(음선필 2020, 111). 이 법안들은 대체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들과 관련하여 차별이 금지되는 삶의 영역은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이 제시되었다. 차별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직접, 간접, 괴롭힘과 차별 광고 등을 적시하였다. 이 법안들은 차별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절차 및 조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법원의 임시조치,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사용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및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음선필 2020, 111-114).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에 논의되는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에서도 거의 모두 반영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정도의 기간에 한국 국회에서 7개나 되는 차별금지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지만 입법에 실패하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제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2.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1) 기본적 내용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6월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안을 제시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장혜영 의원의 이 대표발의 법안은 그 제안 이유로서 헌법 상 차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존재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의 성격이 강해서 실효적 구제수단 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그동안 발의되었던 다른 법안들을 계승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기본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이 이러한 성격의 입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홍성수 2018).

이 법안을 보면,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넓은 의미의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넣어 접근하는 것이다. 즉, 이 법안은 아직 동성결혼(同性結婚)의 합법화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단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성 표현 등에 대하여 차별이 법으로 금지되면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의 제9조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포괄법 또는 기본법으로서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성소수자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더하여 성 표현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법안을 기초함에 있어서 앞에서 논의한 2006년의 욕야카르타원칙에 더하여 2017년의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욕야카르타원칙은 성 소수자의 주요 구성요소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두 가지로 명시한 데 반하여 욕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은 여기에 성 표현과 성 특징까지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염두에 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성별 차별금지가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별이라는 기본용어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기존의 법안들과 달리 남성, 여성, 그리고 이 두 성 외의 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차별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조치들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소송을 통한 구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차별행위자에 대한 입증 책임 부과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의 어떤 차별금지법안들보다 성소수자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반논쟁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한국사회라는 맥락에서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다.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선천적이지 않으며 노력에 따라 탈동성애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규남이 지적하듯이, 성적 지향이 선택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전환치료’라는 명분으로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김규남 2020). 이와 관련하여, 미국정신의학회가 1973년 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III)’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김규남 2020).¹⁵⁾ 다른 한편, 미국심리학회는 2011년 ‘개인에게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의 성적 지향이 발달되는 정확한 이유에 관하여 과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김규남 2020). 또한 미국심리학회는 2008년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을 증가시켜 오히려 동성애자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그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과 단체들은 성적 지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그 일반논평 20호에서 성 정체성을 시정해야 할 차별사유의 하나로 인정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1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14년과 2016년에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 인권법, 미국의 민권법 제7편, 그리고 노르웨이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 등이 성별 정체성을 금지해야 할 별도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허병조 2020, 17-8).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 등에 대하여 이렇게 본다면 차별금지법안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자못 거센 것도 현실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일부 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러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을 볼 수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모든 이를 위한 평등’이라는 명분 하에 차별금지의 사유가 되는 범주들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양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과 같은 범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와

15) 한겨레21. 차별금지법을 이땅에.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24.html (검색일: 2020. 12. 04.).

같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의 합법화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족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에이즈 확산과 같은 의학상의 우려도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이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인정될 경우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한국의 신원(身元) 체계 및 가족법 같은 사회질서에 근본적인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 즉,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한국 헌법의 제36조 2항에 ‘가족제도를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 규정과 배치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명재진 2020, 395). 이러한 견해들의 저변에는 가족제도가 국가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본단위이며 이를 통해 국가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셋째,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한국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한국 일부 기독교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종교선전(포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한국 헌법 20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계에서는 예배 시에 성경 교리에 기초하여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 민사상 또는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서헌재 2020, 178).

(3) 차별금지법안의 전망

이전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이 모두 입법에 실패했지만 현 21대 한국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오랫동안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안의 통과를 시급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소수자들이 느끼거나 실제 겪는 인간적 고통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라는 대의가 확산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동정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인권 존중의 정신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가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를 위한 법적인 노력이 권고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약 30여개 정도의 국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한국 국회에서 제안되었다가 철회되거나 폐기된 차별금지법안들에 대하여 상기할 필요도 있다. ‘왜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일부 국민의 반대가 그토록 거세게 남아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성소수자를 둘러싼 제 측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도 논의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양성 차별, 인종 차별, 장애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아동보호, 고문 금지 등과 같은 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협약은 체결된 반면에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대신,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성소수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이나 그 당사자 단체들이 참여한 민간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 옥야카르타 원칙과 2017년의 옥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의 문서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주요 인권기구에서 한국에 대하여 성소수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그동안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양성관계, 장애인 등의 분야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이미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상황인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관한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소수자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가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소통노력이 필요하다. 즉, 차별금지법안이 보통의 인간으로서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을 우리 사회에 도입해도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공동체 운영, 그리고 성과 관련한 윤리, 도덕적 규범들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서구 다른 국가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공고히 할 때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 국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의 입법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들

속에서 이 법안이 겪고 있는 진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의 전반부에서는 예비적 고찰의 하나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이 등장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당화 추동논리와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유럽 17세기와 18세기에 군주들의 왕권신수설에 저항하는 로크 계열의 자유권의 논리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맑스의 사회권 논리의 등장 그리고 이후 20세기에 있어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우선성을 둘러싼 동서 양진영의 입장 대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2장의 후반부에서는 유엔헌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인종차별 등 인권의 하위 주제들에 대한 국제인권협약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확인하게 된 흥미로운 점은 유엔 총회에서 체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금지협약 등 7개의 국제인권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인권협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2006년 작성, 채택한 옥야카르타원칙과 2017년 추가로 채택한 옥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이 있을 뿐이다. 두 문서들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원칙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제인권협약들과 달리 민간단체가 만든 문서라는 한계점을 부인할 수 없다. 두 문서는 성소수자의 차별금지에 대한 근거를 기존의 국제인권장전에서 확인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 원칙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처해있는 인간적 곤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의학이나 생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반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 관련 국제인권협약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제3장에서는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찬반 논쟁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차별금지법안은 그동안 한국 국회에 수 차례 제안된 다른 차별금지법안의 노력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다양한 기회에 요구되어왔던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 그리고 그 논리적 연장으로서 차별금지를 입법화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인권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차별금지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성소수자들의 상황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선택의 문제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대우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성소수자들의 상황은 의학 및 심리적

상담 등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고 보면서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른 범주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다루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헌법 및 민법 체계에 비춰볼 때 차별금지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상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그것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인권의 또 다른 요소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한국 내에서 아직 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대화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성소수자들을 둘러싼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킬 객관적인 의화정보 등을 좀 더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관련 법령들의 개폐도 검토,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 명재진. 2020. 차별금지법 위헌론. 월드뷰 9.
- 명재진·박성제·음선필·이상현·전윤성·조영길·지영준 공저. 2020.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좋은 생각.
- 서헌제. 2020.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 교회와 법 7(1), 157-185.
- 음선필. 2020.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론 - 기독교의 관점에서 -. 교회와 법 7(1), 107-154.
- 이상현. 2020. 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사례 연구. 교회와 법 7(1), 186- 207.
- 이지현. 2014.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16(3), 107-139.
- 허병조. 2020. 차별금지법안 검토 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 허순철. 2014. 동성혼인과 평등보호: U.S. v. Windsor 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5(4), 63-94.
-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1-38.
- Crawford, Neta C. 2002. Argument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Ethics, Decolonization,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son, Scott. 1995. Human Rights. Open University Press.
- Donnelly, Jack. 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 Donnelly, Jack and Daniel J. Whelan. 2020. International Human Rights. Routledge.
- Laslett, Peter. 1999. John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uren, Paul Gordon. 2011.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sions See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y, Elizabeth Hope. 2019.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Red Thread of International Peace History. Korea Observer 50(2), 207-233.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and Its Committee, Fact Sheet 24(1),

United Nations.

- Vincent, R. John. 1986.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841#0000> (검색일: 2021. 02. 09.).
- 위키백과 동성결혼.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1. 02. 13.).
-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6 (2020. 06. 23.).
- 한겨레21(제1336호).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24.html (검색일 2020. 12. 04.).
- THE YOGYAKARTA PRINCIPLES. 출처: http://yogyakartaprinciples.org/wp-content/uploads/2016/08/principles_en.pdf (검색일: 2021. 02. 12.).
- THE YOGYAKARTA PRINCIPLES plus 10. 출처: http://yogyakartaprinciples.org/wp-content/uploads/2017/11/A5_yogyakartaWEB-2.pdf (검색일: 2021. 02. 13.).
- 출처: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CTC/Ch_IV_15.pdf (검색일: 2021. 02. 08.).
-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at.aspx> (검색일: 2021. 02. 08.).
-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 (검색일: 2021. 02. 07.).
-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rd.aspx> (검색일: 2021. 02. 07.).
-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검색일: 2021. 02. 08.).
- 출처: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imeofgenocide.aspx> (검색일: 2021. 02. 07.).
- 출처: <https://www.romestatute.com/post/176085415538/following-the-red-thread-today-and-tomorrow> (검색일: 2021. 02. 10.).

● 투고일: 2021.02.18. ● 심사일: 2021.02.18. ● 게재확정일: 2021.02.22.

| Abstract |

The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for It

Oh Youngdah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background and prospect for the controversy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efforts against discrimin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While the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deals with a variety of discriminatory fields of human right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y, the main focus of the controversy centers on the equal treatment of the people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As a way of exploring the obstacles to the legislation of the draft bill, this article reviews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discrimination within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Interestingly, there is n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with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whereas there exist Yogyakarta Principles and Yogyakarta Principles Plus Ten formulated by civil society experts and activists as a human rights instrument for the people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 and sexual characteristics. In a similar vein, the Korean society continued to fail in legislating a draft bill on the protection of people of sexual minority. Seen in this wa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ros and cons for the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to get together and to engage in serious dialogues so that they can reach deep mutual understanding of the issue in place.

<Key words>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exual Minority Group, Yogyakarta Principles, Yogyakarta Principles Plus 10